주간건설 Review

669호 2021.4.9(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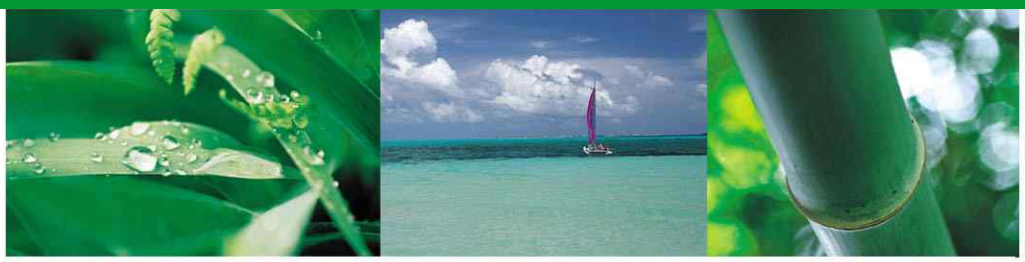

(사)한국건설경영협회
KOREA FEDERATION OF CONSTRUCTION CONTRACTORS
홈페이지 : http://www.kfcc.or.kr, 연 락 처 : 02-771-7936
주 소 : (121-916) 서울 마포구 공덕동 467 롯데캐슬프레지던트 101-2103

주간건설 Review

CONTENTS

▣ 업계 동향

- SK건설, 협력사 위한 ESG 평가모델 개발
- 태영건설, 하수처리시설 에너지 효율 높이는 녹색기술 인증 획득
- 포스코건설, 국내기업 최초로 ESG 파생상품 계약

▣ 건설경제 일반동향

- 건설업계, 층간소음 대응노력 확대
- 철근가격 급등으로 건설현장 비상

▣ 건설 제도·정책 동향

- 공정위 사건절차 규칙 및 동의의결 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본격 시행

◈ SK건설, 협력사 위한 ESG 평가모델 개발

○ 4월6일 SK건설은 기업신용평가사인 이크레더블, 나이스디앤비와 '협력사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모형 개발'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음

○ 이번 협약을 통해 SK건설은 협력사인 비즈파트너를 위한 맞춤형 ESG 평가모형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며, 평가항목에는 탄소배출량, 안전보건, 고용안정, 경영안정성, 회계투명성 등 ESG 측면과 건설업 특성을 반영한 50여가지 항목으로 구성될 예정

'협력사 ESG 평가모형 개발'에 대한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노영훈 나이스디앤비 대표이사, 박경일 SK건설 사업운영총괄, 이진옥 이크레더블 대표이사(왼쪽부터)

○ 평가방법은 자료평가 70%와 현장실사 30%로, 신용평가사가 직접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가 진행되기 때문에 평가의 신빙성도 제고할 수 있다고 SK건설은 설명

○ 한편, 이날 SK건설은 '공정거래 협약식'도 함께 진행해 공정거래를 통한 비즈파트너와의 동반성장을 선언하였음

◈ 태영건설, 하수처리시설 에너지 효율 높이는 녹색기술 인증 획득

○ 4월6일 태영건설은 '연속회분식 반응조 에너지 절감형 거대기포 교반장치' 기술이 녹색기술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음

○ 이 기술은 환경부의 글로벌탑 하폐수 고도처리사업단(단장 김지태 교수)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것으로, 하수처리 과정에서 미생물과 하수의 원활한 혼합을 위해 사용하는 송풍식 또는

기계식 교반장치 대신 수중에서 10~15㎝ 크기의 거대 기포를 발생시켜 유체 순환을 유도하는 교반기술임

○ 특히 수중 용존 산소 농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무산소 공정에 적용이 가능하고, 과잉의 공기를 공급해 포기와 교반을 동시에 수행하는 일반적인 연속회분식 반응조 대비 전력 소비량이 약 15.4% 절감해 장비 단순화 및 에너지 사용량 절감 측면에서 우수성과 친환경성을 인정받았음

○ 녹색기술 인증은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으로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임

◈ 포스코건설, 국내기업 최초로 ESG 파생상품 계약

○ 포스코건설이 국내 기업 중 처음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파생상품 계약을 체결하였음

○ 4월6일 포스코건설은 최근 SC제일은행 및 프랑스 소시에테 제네랄은행과 지난해 수주한 폴란드 바르샤바 소각로 프로젝트 관련 선물환 거래에 ESG 활동 목표를 인센티브 부여 조건으로 추가한 ESG 파생상품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음

'글로벌 ESG 금융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한성희 포스코건설 사장, 박종복 SC제일은행장(왼쪽 두 번째, 세 번째)

○ 일반적으로 국내기업은 해외사업의 환율 변동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래 일정한 날에 일정액의 외국환을 일정한 환율로 매매할 것을 미리 약속하는 선물환 계약을 체결하는데, 포스코건설은 기존 선물환 계약에 ESG 활동의 일환인 온실가스 절감 및 녹색건축(G-Seed) 인증 목표를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제공받는 조건을 덧붙였음

○ 지난해 국내 건설사 최초로 ESG방식 외화 사모사채를 발행한 포스코건설은 이번 계약으로 국내기업 최초로 파생상품 영역까지 ESG활동을 확산시키게 되었음

○ 이와 함께 포스코건설과 SC제일은행은 지난 4월5일 SC제일은행 본점에서 '글로벌 ESG 금융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ESG 파생상품 계약 체결 보고 외에도 차후 무역금융 및 그린 론(Green Loan) 등 ESG 금융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 및 방안들에 대해 양사가 전략적으로 협업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골자임

◈ 건설업계, 층간소음 대응노력 확대

○ 최근 아파트 층간소음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아파트 층간소음 대책을 위해 내년 7월 공동주택에도 '사후 확인제'를 도입한다고 밝히며 건설업계의 대응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음

<주요내용>

❒ 배경

- 건설사들이 층간소음 해소에 부쩍 공을 들이는 건 국토교통부가 내년 7월부터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이 직접적인 배경
- 3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 지차체가 샘플가구를 뽑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측정하도록 의무화한 것으로, 이 권고 기준에 따라 시정요구부터 사용승인(준공) 불허 조치까지 가능해질 전망
- 아울러 지난해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늘고 층간소음 분쟁도 늘어나면서 대형건설사들의 '층간소음 제로화'를 목표로 기술경쟁 분위기 조성
- 실제 한국환경공단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집계된 관련 민원이 4만2250건으로, 전년 대비 61%나 증가할 만큼 층간소음 해소가 건설사들의 화두로 부상
- 특히, 노후 주택은 신축 아파트보다 바닥 두께가 얇아 층간소음에 취약한 경향이 있는데, 층간소음 기술력 확보는 향후 훈풍이 기대되는 리모델링 시장에서도 경쟁력의 주요 변수로 작동할 전망

❒ 건설업계 대응 현황

- 층간소음 대책 마련을 위해 건설사들은 층간소음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음
- 삼성물산은 지난해 12월 조직개편을 통해 설립한 '층간소음연구소'가 최근 일부 바닥 슬래브 두께를 높여 층고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층간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특허 출원을 마치면서 첫 성과물을 내놓았음
- 삼성물산의 '층간소음연구소'는 석·박사급 인력 10여명이 층간소음 원인과 현황 분석에서부터 재료와 구조, 신공법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있음
- 롯데건설도 최근 기술연구원 산하에 소음 진동 전문 연구부서인 '소음 진동 솔루션

팀’을 신설하고 대응에 나섰으며, 이 팀은 층간소음 제로화를 목표로 △소음·진동 △구조 △콘크리트 △설계 △디자인 등 관련분야 석·박사급 인력 13명으로 구성되었음

- 포스코건설도 석박사급 전문인력 16명으로 구성된 ‘층간소음 해결 TF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소재개발부터 설계, 시공기술 전반을 개발해 최단 기간 내 현장에 적용한다는 방침
- 전담조직 신설과 함께 건설사들의 층간소음 관련 신기술 개발 경쟁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음
- 지난 2015년부터 건설업계 최초로 층간소음 연구실을 운용해 온 현대건설은 층간소음 저감기술 'H 사일런트 홈'을 올해부터 적용하며, DL이앤씨는 지난해 3중으로 층간소음을 잡아낼 수 있는 바닥구조를 개발해 특허를 출원하엿고, 대우건설도 '스마트 3중 바닥구조'를 개발해 지난달 특허 출원을 마쳤음

<주요 건설사 층간소음 대응 현황>

현대건설	신기술 개발 - H 사일런트 홈 기술 개발
삼성물산	층간소음연구소 신설 - 층간소음 저감 기술 특허
롯데건설	소음 진동 솔루션팀 신설 - 석박사급 13명 기술 개발
포스코건설	층간소음 해결 TF팀 운영 - 소재개발, 설계, 시공기술 개발
DL이앤씨	신기술 개발 - 3중 바닥구조 특허 출원
대우건설	신기술 개발 - 스마트 3중 바닥구조 특허

❒ 시사점

- 정부가 예고한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의 경우 아파트를 다 짓고 나서 사용승인 불허를 내리면 이미 완공한 건물을 부수고 새로 지을 수는 없다는 점에서 층간소음 규제 강화가 근본 대책이 될 수는 없을 것이란 평가
- 사후 확인제 보다는 사전 가이드라인 정비를 통해 층간 폭을 210㎜ 이상으로 규정한 국토부 가이드라인을 240㎜ 이상으로 늘린다던가 관련 조례와 법규 등을 일괄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 실제 건설업계와 전문가들은 층간소음의 가장 간단한 해법이 바닥을 두껍게 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만큼 비용을 투입해야 하는데 분양가를 제한하는 분양가 상한제 안에서는 상황 해결이 더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보완대책이 필요

◈ 철근가격 급등으로 건설현장 비상

○ 올해 2분기 철근 기준가격이 적용된 4월 첫째주 철근 유통가격이 t당 82만원을 기록하면서 건설현장에 비상등이 켜졌음

○ 1분기 대비 기준가격이 12%나 상승한데다 유통가격이 80만원을 넘은 것은 2012년 이후 처음이어서 심리적 마지노선까지 무너진 것

<주요내용>

- 자재업계에 따르면 4월 첫주 고장력 10㎜(즉시현금 거래 기준) 철근 도매 유통가격은 t당 82만원으로 전주 대비 3만원 상승해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철근 유통가격이 고공행진할 것이란 전망이 현실화
- 당초 건설업계는 2분기 유통가격은 제강사가 제시한 2분기 기준가격인 80만3000원보다 밑돌 것으로 기대했지만, 4월 첫주 유통가격이 기준가격을 상회한 것
- 제강업계는 2분기부터 생산을 늘리기로 했지만, 건설현장이 성수기로 접어들면서 수급은 여전히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유통업체들 역시 공급이 부족한 상황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어 건설사들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음

<국내 철근가격 인상 추이>

(단위: 천원/t)

	3월 1주	3월 2주	3월 3주	3월 4주	3월 5주~4월 1주
도매	750	760	770	790	820
소매	770	780	790	810	840
수입산	750	765	775	795	815

- 최근 철근가격 급등과 관련해 업계에서는 시중 유통가격이 t당 100만원을 훌쩍 넘어섰던 2008년이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이음
- 2008년에는 4대강과 보금자리주택 건설이 동시에 진행되는 가운데 중국 내 철근 수요 확대로 수입물량마저 줄어들면서 국내 건설현장은 유례없는 철근 수급 대란을 겪었던 바 있음
- 2분기 기준가격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음에도 유통가격이 기준가격을 넘어선 것을 감안하면, 이 같은 철근 수급 불안은 최소 상반기 내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

◈ 공정위 사건절차 규칙 및 동의의결 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 4월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및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

○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4월5일~4월26일)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이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처분시효의 기산일인 '조사개시일' 정의

- 개정 공정거래법 및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령안에 따라, 조사 개시일을 신고 사건의 경우 '신고 접수일', 공정위가 직권으로 조사하는 사건의 경우 '현장 조사일, 자료 제출 요구일 등의 날 중 가장 빠른 날'로 명확히 규정

❒ 피심인의 자료 열람·복사 요구권 명확화

- 위원회가 영업비밀 자료, 자진신고 관련 자료, 기타 법률에 따른 비공개 자료를 제외하고는 당사자 등의 열람·복사 요구를 허용하도록 규정
- 피심인의 대리인이 심판정에서 「자료의 열람·복사 업무지침」에 따른 비공개 열람보고서에 기재된 영업비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발언하고자 하는 경우, 피심인 퇴정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

❒ 조사결과 통지의무 구체화

- 공정위가 조사를 한 결과,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거, 내용 및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실적으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지의무 예외를 인정하기로 함

❒ 심의·의결 단계에서 조사행위 제한

- 심의·의결 단계에서 조사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하거나 당사자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규정

❒ 전원회의·소회의 진술시간 합리화

- 전원회의·소회의 심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의장이 적절한 범위 내에서 진술시간 제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

❒ 전원회의·소회의 참석자 범위 합리화

- 전원회의·소회의 보조 심의 참석자 범위를 위원회 직원으로 확대하되, 조사·심의 기능의 분리를 위해 심판관리관실 소속 직원은 제외하도록 명시

❒ 사건착수사실 통지대상 및 통지방법 확대

- 사건착수사실 통지대상을 피조사인 뿐만 아니라 신고인으로 확대하고, 통지 방법도 기존의 서면 이외에 문자메세지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화 함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이행관리 업무 수탁기관 지정 및 위탁대상 업무 규정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소비자원에 공정거래법에 따른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를 위탁하도록 규정하면서, 이행점검·자료제출 요청 등 위탁의 대상이 되는 이행관리 업무를 명확히 규정

❒ 공정거래위원회의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 규정

- 공정위가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수탁기관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를 취소·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 공정위는 필요한 경우 수탁기관의 요청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이행관리 업무 담당자에 대해서는 제공받은 자료의 목적 외 이용을 금지하도록 규정

❒ 수탁기관의 이행관리 현황 보고

- 수탁기관의 장은 매 분기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위탁받은 동의의결에 대한 이행관리 현황을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동의의결을 받은 신청인이 시정방안 불이행 시 즉시 그 사실을 공정위에 통보하도록 함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본격 시행

○ 최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초급건설기술인의 건설시장 진입을 완화하고, 경력인정 범위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본격 시행하고, 신설 교육과정 개발 등 후속조치를 마련 중

○ 개정안은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기술인의 어려움을 해고하고 다양한 분야의 혁신인재들을 건설산업으로 유입할 수 있는 장치가 될 전망

<주요내용>

❒ 초급건설기술인의 건설시장 진입 완화

- 정해진 교육이수를 통해 초급기술인으로 진입가능토록 함
- 기존에는 건설 관련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건설기술인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일정 경력이 필요해 청년층의 건설시장 진입이 어려웠음

❒ **건설관련업무의 인정범위 확대**

- 건설공사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 정책 및 제도에 대한 개발·조사·연구 및 관리 등을 수행하는 업무도 경력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됨